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(안)

검토보고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제71호
제 출 자	진선아 의원 외 6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(안)
검 토	전문위원 유 천 곤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, 성북구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규칙안의 제정목적 (안 제1호)
-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~제3조)
- 규칙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위임규정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¹⁾,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²⁾

1) 제69조의4(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)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·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조사 및 수사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, 해임,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1호·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편성

다. 입법예고 : 2022. 11. 10. ~ 2022. 11. 15.

4. 검토의견

- 본 규칙(안)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으로 구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,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, 본 규칙(안)은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며, 성북구의회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당 공무원이 파면·해임·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,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비위(非違)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
 2. 인사위원회에 파면·해임·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
 3.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 4.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
- 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- 2) 제14조의2(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)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·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